

#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B1BL) 입주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7.18.(금)]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00-7699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민영    | 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br>(2024.07.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군포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br>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3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5.07.18.(금) | 2025.07.28.(월) | 2025.07.29.(화) | 2025.07.30.(수) | 2025.08.05.(화) | 2025.08.06.(수)~<br>2025.08.13.(수) | 2025.08.18.(월)~<br>2025.08.20.(수)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주택건설형 공모로 공급된 사업으로, 총 502세대 중 50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며(61타입 5세대, 63타입 4세대, 84A타입 20세대, 84B타입 16세대, 84C타입 5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거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입주자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사전공급신청 접수 1세대 제외 451세대 일반분양)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하여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변경 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br>인증서 | 금융<br>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APT     | ○         |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군포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7.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5.07.28.(월)  | 2025.07.29.(화)  | 2025.07.30.(수)   | 2025.08.05.(화)  | 2025.08.06.(수)~<br>2025.08.13.(수) | 2025.08.18.(월)~<br>2025.08.20.(수)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건본주택<br/>(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번지)</li> </ul>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 10년              |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군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공급계약, 발코니 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옵션)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5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를 포함)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 총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 : 공급계약서와 그에 따른 부속계약(발코니 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기재 합계 금액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대상증서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발코니확장 계약서  |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br>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납부세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예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예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 9772호(2025. 07. 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군포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럭(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90-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동 총 502세대 중 일반분양 4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9세대(기관추천 45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8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103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85세대) 및 이주자대책 1세대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주택건설형 공모로 공급된 사업으로, 총 502세대 중 50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61타입 5세대, 63타입 4세대, 84A타입 20세대, 84B타입 16세대, 84C타입 5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거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임. (이주대책 대상자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선정된 1세대를 제외한 451세대를 일반분양합니다.)

■ 주차대수 : 아파트 703대 및 근린생활시설 6대(※용도별 주차계획 및 주차대수는 추후 설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 주택<br>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br>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비분 | 총공급<br>세대수 | 이주자<br>대책<br>대상자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 일반공급<br>세대수 | 최하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 기관<br>추천 | 개발제한<br>구역<br>해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                    |
| 2025000287 | 01  | 061.9921        | 61       | 61.9921                 | 20.8203    | 82.8124  | 41.8099                    | 124.6223 | 58.3166     | 47         | 0                | 4        | 0                | 4         | 10       | 1         | 8        | 27  | 20          | 2                  |
|            | 02  | 063.9931        | 63       | 63.9931                 | 20.5337    | 84.5268  | 43.1595                    | 127.6863 | 60.1990     | 48         | 0                | 4        | 0                | 4         | 11       | 1         | 9        | 29  | 19          | 2                  |
|            | 03  | 084.9966A       | 84A      | 84.9966                 | 26.4547    | 111.4513 | 57.3252                    | 168.7765 | 79.9572     | 176        | 1                | 19       | 8                | 19        | 41       | 6         | 34       | 127 | 48          | 6                  |
|            | 04  | 084.9321B       | 84B      | 84.9321                 | 26.3885    | 111.3206 | 57.2817                    | 168.6023 | 79.8965     | 138        | 0                | 14       | 0                | 14        | 32       | 4         | 26       | 90  | 48          | 3                  |
|            | 05  | 084.9964C       | 84C      | 84.9964                 | 26.9399    | 111.9363 | 57.3251                    | 169.2614 | 79.9570     | 43         | 0                | 4        | 0                | 4         | 9        | 1         | 8        | 26  | 17          | 2                  |
|            | 합 계 |                 |          |                         |            |          |                            |          |             |            | 452              | 1        | 45               | 8         | 45       | 103       | 13       | 85  | 299         | 152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나 실제 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대지비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비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은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는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          | 061.9921 | 063.9931 | 084.9966A | 084.9321B | 084.9964C |
|--------------|----------|----------|-----------|-----------|-----------|
| 건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 61       | 63       | 84A       | 84B       | 84C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이주자 대책 대상자 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 분(약식표기)                         |                        | 61        | 63        | 84A        | 84B       | 84C       | 합 계        |    |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1         | -          | 2         | 1         | 1          | 5  |
|                                   |                        | 인천광역시     | -         | 1          | 2         | 1         | -          | 4  |
|                                   |                        | 서울특별시     | -         | -          | 2         | 1         | -          | 3  |
|                                   | 국가유공자 등                |           | 1         | 1          | 2         | 2         | 1          | 7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          | 3         | 2         | 1          | 7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1          | 3         | 2         | -          | 6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1          | 5         | 5         | 1          | 13 |
|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                        | -         | -         | 8          | -         | -         | 8          |    |
| 이주자 대책 대상자                        |                        | -         | -         | 1          | -         | -         | 1          |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2         | 2         | 10         | 7         | 2         | 23         |    |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         | 2         | 9          | 7         | 2         | 22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0        | 11        | 41         | 32        | 9         | 103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1         | 6          | 4         | 1         | 13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8         | 9         | 34         | 26        | 8         | 85         |    |
| <b>합 계</b>                        |                        | <b>27</b> | <b>29</b> | <b>128</b> | <b>90</b> | <b>26</b> | <b>300</b>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VAT포함)

| 약식<br>표기 | 동호<br>라인별  | 층수     |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계약 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잔금(30%)<br>입주지정일 |             |
|          |  |        |     |             |             |       |             |            | 2026.01.30. | 2026.06.30. | 2026.11.30. | 2027.03.30. | 2027.08.30. | 2028.01.31. |                  |             |
| 61       | 104동 2, 3호   | 1층     | 2   | 214,419,000 | 257,281,000 | -     | 471,700,000 | 47,170,000 | 47,170,000  | 47,170,000  | 47,170,000  | 47,170,000  | 47,170,000  | 47,170,000  | 47,170,000       | 141,510,000 |
|          |  | 2층     | 2   | 214,419,000 | 260,781,000 | -     | 475,200,000 | 47,520,000 | 47,520,000  | 47,520,000  | 47,520,000  | 47,520,000  | 47,520,000  | 47,520,000  | 47,520,000       | 142,560,000 |
|          |  | 3층     | 2   | 214,419,000 | 264,181,000 | -     | 478,600,000 | 47,860,000 | 47,860,000  | 47,860,000  | 47,860,000  | 47,860,000  | 47,860,000  | 47,860,000  | 47,860,000       | 143,580,000 |
|          |  | 4층     | 1   | 214,419,000 | 268,681,000 | -     | 483,100,000 | 48,310,000 | 48,310,000  | 48,310,000  | 48,310,000  | 48,310,000  | 48,310,000  | 48,310,000  | 48,310,000       | 144,930,000 |
|          |  | 5~9층   | 10  | 214,419,000 | 273,581,000 | -     | 488,0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146,400,000 |
|          |  | 10~20층 | 19  | 214,419,000 | 278,581,000 | -     | 493,0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147,900,000 |
|          |  | 21~26층 | 11  | 214,419,000 | 283,581,000 | -     | 498,0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149,400,000 |
| 63       | 104동 1, 4호   | 1층     | 2   | 221,340,000 | 256,660,000 | -     | 478,0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143,400,000 |
|          |  | 2층     | 2   | 221,340,000 | 260,260,000 | -     | 481,600,000 | 48,160,000 | 48,160,000  | 48,160,000  | 48,160,000  | 48,160,000  | 48,160,000  | 48,160,000  | 48,160,000       | 144,480,000 |
|          |  | 3층     | 2   | 221,340,000 | 263,760,000 | -     | 485,100,000 | 48,510,000 | 48,510,000  | 48,510,000  | 48,510,000  | 48,510,000  | 48,510,000  | 48,510,000  | 48,510,000       | 145,530,000 |
|          |  | 4층     | 2   | 221,340,000 | 268,260,000 | -     | 489,600,000 | 48,960,000 | 48,960,000  | 48,960,000  | 48,960,000  | 48,960,000  | 48,960,000  | 48,960,000  | 48,960,000       | 146,880,000 |
|          |  | 5~9층   | 9   | 221,340,000 | 273,260,000 | -     | 494,600,000 | 49,460,000 | 49,460,000  | 49,460,000  | 49,460,000  | 49,460,000  | 49,460,000  | 49,460,000  | 49,460,000       | 148,380,000 |
|          |  | 10~20층 | 19  | 221,340,000 | 278,260,000 | -     | 499,600,000 | 49,960,000 | 49,960,000  | 49,960,000  | 49,960,000  | 49,960,000  | 49,960,000  | 49,960,000  | 49,960,000       | 149,880,000 |
|          |  | 21~26층 | 12  | 221,340,000 | 283,360,000 | -     | 504,700,000 | 50,470,000 | 50,470,000  | 50,470,000  | 50,470,000  | 50,470,000  | 50,470,000  | 50,470,000  | 50,470,000       | 151,410,000 |
| 84A      | 101동 1, 4호<br>102동 1, 4호<br>103동 1, 4호<br>105동 1, 4호 | 1층     | 3   | 293,987,000 | 372,313,000 | -     | 666,300,000 | 66,630,000 | 66,630,000  | 66,630,000  | 66,630,000  | 66,630,000  | 66,630,000  | 66,630,000  | 66,630,000       | 199,890,000 |
|          |  | 2층     | 5   | 293,987,000 | 377,213,000 | -     | 671,200,000 | 67,120,000 | 67,120,000  | 67,120,000  | 67,120,000  | 67,120,000  | 67,120,000  | 67,120,000  | 67,120,000       | 201,360,000 |
|          |  | 3층     | 8   | 293,987,000 | 382,113,000 | -     | 676,100,000 | 67,610,000 | 67,610,000  | 67,610,000  | 67,610,000  | 67,610,000  | 67,610,000  | 67,610,000  | 67,610,000       | 202,830,000 |
|          |  | 4층     | 8   | 293,987,000 | 388,413,000 | -     | 682,400,000 | 68,240,000 | 68,240,000  | 68,240,000  | 68,240,000  | 68,240,000  | 68,240,000  | 68,240,000  | 68,240,000       | 204,720,000 |
|          |  | 5~9층   | 35  | 293,987,000 | 395,413,000 | -     | 689,400,000 | 68,940,000 | 68,940,000  | 68,940,000  | 68,940,000  | 68,940,000  | 68,940,000  | 68,940,000  | 68,940,000       | 206,820,000 |
|          |  | 10~20층 | 79  | 293,987,000 | 402,413,000 | -     | 696,400,000 | 69,640,000 | 69,640,000  | 69,640,000  | 69,640,000  | 69,640,000  | 69,640,000  | 69,640,000  | 69,640,000       | 208,920,000 |
|          |  | 21~27층 | 38  | 293,987,000 | 409,413,000 | -     | 703,400,000 | 70,340,000 | 70,340,000  | 70,340,000  | 70,340,000  | 70,340,000  | 70,340,000  | 70,340,000  | 70,340,000       | 211,020,000 |
| 84B      | 101동 2, 3호<br>102동 2, 3호<br>105동 2, 3호               | 1층     | 3   | 293,764,000 | 371,836,000 | -     | 665,600,000 | 66,560,000 | 66,560,000  | 66,560,000  | 66,560,000  | 66,560,000  | 66,560,000  | 66,560,000  | 66,560,000       | 199,680,000 |
|          |  | 2층     | 6   | 293,764,000 | 376,636,000 | -     | 670,400,000 | 67,040,000 | 67,040,000  | 67,040,000  | 67,040,000  | 67,040,000  | 67,040,000  | 67,040,000  | 67,040,000       | 201,120,000 |
|          |  | 3층     | 4   | 293,764,000 | 381,536,000 | -     | 675,300,000 | 67,530,000 | 67,530,000  | 67,530,000  | 67,530,000  | 67,530,000  | 67,530,000  | 67,530,000  | 67,530,000       | 202,590,000 |
|          |  | 4층     | 6   | 293,764,000 | 387,836,000 | -     | 681,60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204,480,000 |
|          |  | 5~9층   | 27  | 293,764,000 | 394,836,000 | -     | 688,60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206,580,000 |
|          |  | 10~20층 | 63  | 293,764,000 | 401,836,000 | -     | 695,60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208,680,000 |
|          |  | 21~27층 | 29  | 293,764,000 | 408,836,000 | -     | 702,60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210,780,000 |
| 84C      | 103동 2, 3호   | 1층     | 2   | 293,986,000 | 372,014,000 | -     | 666,0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199,800,000 |
|          |  | 2층     | 1   | 293,986,000 | 376,914,000 | -     | 670,900,000 | 67,090,000 | 67,090,000  | 67,090,000  | 67,090,000  | 67,090,000  | 67,090,000  | 67,090,000  | 67,090,000       | 201,270,000 |
|          |  | 3층     | 2   | 293,986,000 | 381,814,000 | -     | 675,800,000 | 67,580,000 | 67,580,000  | 67,580,000  | 67,580,000  | 67,580,000  | 67,580,000  | 67,580,000  | 67,580,000       | 202,740,000 |
|          |  | 4층     | 2   | 293,986,000 | 388,114,000 | -     | 682,100,000 | 68,210,000 | 68,210,000  | 68,210,000  | 68,210,000  | 68,210,000  | 68,210,000  | 68,210,000  | 68,210,000       | 204,630,000 |
|          |  | 5~9층   | 9   | 293,986,000 | 395,114,000 | -     | 689,100,000 | 68,910,000 | 68,910,000  | 68,910,000  | 68,910,000  | 68,910,000  | 68,910,000  | 68,910,000  | 68,910,000       | 206,730,000 |
|          |  | 10~20층 | 20  | 293,986,000 | 402,114,000 | -     | 696,100,000 | 69,610,000 | 69,610,000  | 69,610,000  | 69,610,000  | 69,610,000  | 69,610,000  | 69,610,000  | 69,610,000       | 208,830,000 |
|          |  | 21~24층 | 7   | 293,986,000 | 409,114,000 | -     | 703,100,000 | 70,310,000 | 70,310,000  | 70,310,000  | 70,310,000  | 70,310,000  | 70,310,000  | 70,310,000  | 70,310,000       | 210,930,000 |

※ 상기 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
|-------------------------|---|
| <p>청약<br/>유의<br/>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li> <li>• 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li> <li>• 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ul>   |
| <p>공급<br/>금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li> <li>•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ul>  |
| <p>중도금<br/>및<br/>잔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임.</li> <li>•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기관,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하여야하며, 대출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시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나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li> <li>•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아파트 분양대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선납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함)</li> <li>•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납부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             |   |
|-------------|---|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li> <li>•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li> <li>•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ul>  |
| 보증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li> </ul>   |
| 당첨자 선정 및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i> <li>•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표시재산의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li> <li>• 투시도 및 조감도의 갈치호수 조망 및 동배치,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단지모형, 견본주택 전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 가 각 1/2씩 부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ul>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LH주택공사)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li> </ul>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팀</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p>[미신청 또는 다른 유형의 주택형 선택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됨으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ul> |

5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br>(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br>(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br>(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공공) |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  |   |   |
|--|--|---|---|
|  |  |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b>외의 세대원</b>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b>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b>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구분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발표일이 늦은</b>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접수일시가 늦은</b> 당첨건은 <b>무효</b>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모두 <b>부적격</b> 처리</p>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b>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b></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   |

|  |  |                                      |                        |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경기도 군포시 및 경기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br>(서울특별시)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                                      |                        |

|            |                                       |                                   |
|------------|---------------------------------------|-----------------------------------|
| <b>5-1</b> | <b>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b>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
| 추천기관        | <p>■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p> <p>■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p> <p>■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p> <p>■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p>  |
| 당첨자<br>선정방법 |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5-2**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주택 기준 : 8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LH주택공사)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li> </ul>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팀</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p>[미신청 또는 다른 유형의 주택형 선택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됨으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ul> <p>※ 본 주택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8세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선정된 [협의 양도인] 공급대상 (한국주택공사 내규에 의한 공급 대상자, 총 4세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

**5-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b>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b>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b>①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 50%(경기도 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li> <li>-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li> <li>-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li> </ul> </li> </ul>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름

■ ②배점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r>-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br><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5-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03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ul> |

|  |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  |  |   |     |                   |  |     |                   |  |     |               |  |     |               |  |     |      |   |
|--|---|--|--|---|-----|-------------------|--|-----|-------------------|--|-----|---------------|--|-----|---------------|--|-----|------|---|
| <p>당첨자 선정방법</p>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br/>(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br/>(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br/>(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br/>(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br>(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br>(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br>(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단계 | 일반공급<br>(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br>(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br>(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br>(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br>(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   |  |  |   |     |                   |  |     |                   |  |     |               |  |     |               |  |     |      |   |
|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     |               |  |     |               |  |     |      |   |
|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p>   |   |  |  |   |     |                   |  |     |                   |  |     |               |  |     |               |  |     |      |   |
| <p>비고</p>  |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  |  |   |     |                   |  |     |                   |  |     |               |  |     |               |  |     |      |   |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07.18.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br>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 신생아일반공급,<br>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40% 이하     | 7,205,313원~<br>10,087,437원 | 8,578,089원~<br>12,009,323원  | 9,031,049원~<br>12,643,467원  | 9,733,087원~<br>13,626,320원  | 10,435,125원~<br>14,609,174원 | 11,137,163원~<br>15,592,027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br>160% 이하     | 8,646,375원~<br>11,528,499원 | 10,293,707원~<br>13,724,941원 | 10,837,259원~<br>14,449,677원 | 11,679,704원~<br>15,572,938원 | 12,522,150원~<br>16,696,198원 | 13,364,595원~<br>17,819,459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    |                    |               |      |                                  |      |  |                 |

**5-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p> <p>-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b>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b>12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b>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p> <p>■ <b>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b></p> <p>■ <b>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b></p> <p>-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1명             |               |                | 10              | 5명              | 30 |
|  | 2명             |               |                | 15              | 6명 이상           | 35 |
|  | 3명             |               |                | 20              |                 |    |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5-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85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ul> </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li> </ul> |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본 주택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br>2025.07.18.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br>우선공급 | 130% 이하                 | ~9,366,906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13,565,661원                | ~14,478,311원                |              |
| 신생아일반공급,<br>일반공급 | 130% 초과<br>160% 이하      | 9,366,907원~<br>11,528,499원 | 11,151,515원~<br>13,724,941원 | 11,740,363원~<br>14,449,677원 | 12,653,013원~<br>15,572,938원 | 13,565,662원~<br>16,696,198원 | 14,478,312원~<br>17,819,459원 |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 건축물                              |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토지                               |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                    |               |      |                                  |      |

**6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li>■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경기도 군포시 및 경기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br>(서울특별시) | 그 밖의 광역시<br>(인천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br>(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br>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 <p><b>인정 적용기준</b></p>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                              |    |    |     |             |          |     |               |                             |     |               |                              |
|--|--|------------------------------|----|----|-----|-------------|----------|-----|---------------|-----------------------------|-----|---------------|------------------------------|
|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                              |    |    |     |             |          |     |               |                             |     |               |                              |
|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    |    |     |             |          |     |               |                             |     |               |                              |
| <p>■ <b>②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단계   | 비율   | 내용                           |    |    |     |             |          |     |               |                             |     |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               |                             |     |               |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               |                             |     |               |                              |
| <p>■ <b>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ul>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  |                              |    |    |     |             |          |     |               |                             |     |               |                              |
| <p><b>비고</b></p>   | <p>■ <b>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    |     |             |          |     |               |                             |     |               |                              |

### ■ 청약신청 안내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br>개발제한구역 해제 | <b>2025.07.28.(월)</b><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건본주택<br/>(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번지)</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b>2025.07.29.(화)</b> 09:00~17: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 2순위   | <b>2025.07.30.(수)</b> 09:00~17:30   |                        |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h4>인감증명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 <h4>본인서명확인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li> </ul>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08.05.(화)</li> <li>• 확인방법</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            |  |
| <b>공고단지 청약연습</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
| <b>당첨자발표 서비스</b>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15 1425 521 1520"> <b>청약홈</b> </td> <td data-bbox="521 1425 2136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8.05.(화) ~ 2025.08.14(목) (10일간)</li> </ul> </td> </tr> </table>  | <b>청약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8.05.(화) ~ 2025.08.14(목) (10일간)</li> </ul> |
| <b>청약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8.05.(화) ~ 2025.08.14(목) (10일간)</li> </ul>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5.08.0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                            |   |   |
|-----------------------------|-------|----------------------------|---|---|
| 구분                          |       |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 장소   |
| 특별공급<br>및<br>일반공급           | 당첨자   | 당첨자 전원                     | 2025.08.06.(수) ~ 2025.08.13.(수) 10:00~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번지)</li> <li>-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침</li> </ul> |
|                             | 예비입주자 |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   |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 \(http://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com\)](http://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com)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홈페이지\(http://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com\)](http://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com)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동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br>무주택서약서   | 청약자  | • 건본주택 비치   |
|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내내(신청자용)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br>•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5.07.18.)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        |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  |      | •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건본주택 비치)<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 ○       | 복무확인서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                   |   |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5.07.18.) 기준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출산 이행 각서          |   | • 임신의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소득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신생아   |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

|            |   |             |                |  |  |
|------------|---|-------------|----------------|--|--|
|            |   |             |                |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출산 이행각서        |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
|            |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5.07.18.) 기준 설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5.07.18.) 기준 설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 소득 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신생아  |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출산 이행각서           |  | • 임신의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위임장               | 청약자  | • 주택전시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           | 도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시 상기 해당 접수 유형별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 생애최초)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불가 시,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적용 | ①, ②, ③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2024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br>②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직인 날인) ③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br>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① ~ ③ 해당직장<br>④ 세무서 ⑤ 등기소 |
|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2024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원본, 직인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① 세무서,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2024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 날인)    | ① 해당직장   |                           |
|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내용 참조   |                           |
| 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① 주택전시관 비치<br>② 세무서  |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2024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재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객관적인 소득산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자는 소득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br>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br>납부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br>③ 해당직장<br>④ 해당직장/세무서 |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br>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③ 주민센터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주민센터<br>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   |   |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br>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br>③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br>(세대원<br>전원) |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br>②해당 시청, 구청, 주민센터,<br>위택스( <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 )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무주택서약서       | 청약자  | • 견본주택 비치   |
|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br>•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5.07.18.)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li> </ul>  |
|                   | ○       |          | 인감도장              |  |   |
|                   |         | ○        | 복무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li> </ul> |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li> </ul>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li> </ul> |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li> <li>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5.07.18.) 기준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li> </ul>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거주기간 확인</li> <li>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8.)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

| 구분                         | 서류 유형 |          |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li> </ul>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8.)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
| 제3자<br>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 ○        | 위임장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전시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li> </ul>   |
|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li> <li>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li> </ul>   |
|                            |       | ○        | 신분증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li> </ul>  |
|                            |       | ○        |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명 또는 날인</li> </ul>   |
| 부적격 통보를<br>받은자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ul>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li> </ul>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li> </ul>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 기타                         |       | ○        | 그 외 사업주체가<br>요구하는 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li> </ul>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p><b>검색대상</b></p>                  | <p>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
| <p><b>주택의 범위</b></p>                | <p>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
| <p><b>주택처분 기준일</b></p>              |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
| <p><b>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b></p> |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                 9. <b>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br/>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br/>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br/>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br/>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br/>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당첨자 계약 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5.08.18.(월) ~ 2025.08.20.(수) 3일간 10:00 ~ 16:00 | 대야미역 금강팬테리움 레이크포레 건본주택<br>(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번지) |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수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본인<br>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br>※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    |             | 전자수입인지                       |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br>입주계획서         |      | • 홈페이지 서식 참조  |
|                               | ○    |             | 당첨 유형별<br>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대리인 계약 시<br>추가사항<br>(본인 외 모두)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함<br>※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BNK 부산은행 | 113-2019-4872-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 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함)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수입인지 구매금액 - 아파트분양계약에 대한 수입인지 금액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부담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세액(균등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총 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 주의사항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종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4)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5)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다른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분을 납부(구매)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 ②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및 대출 알선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 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서는 계약자의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또는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금자명이 '동 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납입 확인 불가할 경우 미납으로 간주되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납은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품목     | 적용 주택형(타입) | 확장 공사비    | 계약금     | 중도금 1차(10%) | 중도금 2차(10%) | 잔금(70%)   |
|--------|------------|-----------|---------|-------------|-------------|-----------|
|        |            |           | 계약체결시   | 2026-06-30  | 2027-03-30  | 입주지정일     |
| 발코니 확장 | 61         | 7,20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5,040,000 |
|        | 63         | 5,80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4,060,000 |
|        | 84A        | 6,60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4,620,000 |
|        | 84B        | 6,300,000 | 630,000 | 630,000     | 630,000     | 4,410,000 |
|        | 84C        | 6,700,000 | 670,000 | 670,000     | 670,000     | 4,69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 BNK 부산은행 | 113-2019-4871-04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확장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예) 101동 0102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2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 주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 품목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 구분      | 옵션명      | 주택형             | 설치위치         | 설치개소 | 공급금액      | 비고 |
|---------|----------|-----------------|--------------|------|-----------|----|
| 시스템 에어컨 | 시스템 에어컨1 | 61 / 63         | 거실 + 침실1(안방) | 2    | 4,250,000 | 택1 |
|         |          | 84A / 84B / 84C |              |      | 4,380,000 |    |

|             |                 |  |   |           |
|-------------|-----------------|--|---|-----------|
| 시스템<br>에어컨2 | 61 / 63         |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3   | 3 | 5,410,000 |
|             | 84A / 84B / 84C |  |   | 5,670,000 |
| 시스템<br>에어컨3 | 61 / 63         |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4 | 6,830,000 |
|             | 84A / 84B / 84C |  |   | 7,080,000 |
| 시스템<br>에어컨4 | 84A / 84B / 84C |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알파룸2<br>[※시스템에어컨4는 알파룸2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선택불가] | 5 | 8,240,000 |

- 84타입의 경우 알파룸2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4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2,3(침실1,2,3은 벽걸이형)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옵션미선택세대의 냉방기는 홈멀티형 제품에 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예 실외기1대, 실내기 4대 이상 등)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옵션 선택시, 공간 옵션 선택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그에 맞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공간 스타일업

| 구분         | 옵션명          | 주택형             | 구성 내용   | 공급금액                        | 비고        |
|------------|--------------|-----------------|---|-----------------------------|-----------|
| 공간<br>스타일업 | 불박이장         | 61 / 63         | 침실2 불박이장(수납형)<br>[※가변형벽체 미선택시(61, 63타입 거실통합형, 84타입 침실통합형)선택불가]      | 1,900,000                   |           |
|            |              | 84A / 84B / 84C |   | 1,900,000                   |           |
|            |              | 61 / 63         |   | 2,280,000                   |           |
|            |              | 84A / 84B / 84C |   | 2,280,000                   |           |
|            | 드레스룸<br>스타일업 | 61              | 1도어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시스템 가구 (조명 벽판넬형 선반, 고급 2단 서랍장, 전신거울, 벽 마감: 가구 판넬) | 2,400,000                   |           |
|            |              | 63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시스템 가구 (조명 벽판넬형 선반, 고급 2단 서랍장, 벽 마감: 가구 판넬)       | 3,000,000                   |           |
|            |              | 84A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시스템 가구 (조명 벽판넬형 선반, 고급 2단 서랍장, 전신거울, 벽 마감: 가구 판넬) | 3,000,000                   |           |
|            |              | 84B             |   | 2,900,000                   |           |
|            |              | 84C             |   | 3,400,000                   |           |
|            | 알파룸1<br>스타일업 | 61              | 멀티룸형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주방 벽마감(FIX판넬) | 1,070,000 |
| 수납강화형      |              |                 | 복도팬트리 + 주방팬트리(3연동 슬라이딩 포함) + 주방 벽마감(FIX판넬)                          | 2,750,000                   |           |
| 84A / 84C  |              | 멀티룸형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주방 벽마감(FIX판넬)   | 2,330,000                   | 택1        |

|           |              |                 |   |   |           |           |
|-----------|--------------|-----------------|---|---|-----------|-----------|
|           | 수납강화형        |                 | 복도팬트리 + 주방팬트리 + 주방 장식장 (유리플랩장(상,하부조명), 엔지니어드상판, 미드웨이) + 유리가구 FIX 패널 | 5,360,000                               | 택1        |           |
|           |              | 84B             | 수납강화형1  | 복도 대형 팬트리                               |           | 1,450,000 |
|           |              |                 | 수납강화형2  | 복도팬트리 + 주방팬트리                           |           | 2,220,000 |
|           | 알파룸2<br>스타일업 | 84A / 84B / 84C | 가변형벽체 선택시   | 침실1 대형 드레스룸 : 가구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 1,970,000 |           |
|           | 주방팬트리        | 63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 가구   |   | 1,410,000 |           |
|           | 주방장식장        | 84B             | 주방 장식장(유리플랩장(상,하부조명) + 엔지니어드상판 + 미드웨이)                              |   | 2,410,000 |           |
|           | 열차단<br>필름    | 61              | 후퍼옵틱 태양열 차단필름   |   | 2,760,000 |           |
|           |              | 63              |   |   | 2,560,000 |           |
|           |              | 84A / 84B / 84C |   |   | 3,240,000 |           |
|           | 바닥타일<br>스타일업 | 61              | 가변형 벽체 선택시  | 포세린 타일(600*600) (거실, 주방, 복도)            | 1,500,000 |           |
|           |              | 63              |   |   | 1,800,000 |           |
|           |              | 84A / 84B / 84C |   |   | 2,800,000 |           |
|           |              | 61              | 가변형 벽체 미선택시   | 포세린 타일(600*600) (거실, 주방, 복도, 침실2, 알파룸1) | 2,140,000 |           |
|           |              | 63              |   |   | 2,340,000 |           |
| 84A / 84C |              | 3,470,000       |   |   |           |           |
| 84B       |              | 3,470,000       |   |   |           |           |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액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가구의 길이, 구성,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타입별 추가선택품목 관련 항목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벽과의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가구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바닥과 벽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 시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및 기본형 마감의 벽지와 천장지로 시공됩니다.
- 타입별로 가구의 구성과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에 과도한 중량물 적재 시 파손 및 판넬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는 의류보관용으로 과도한 적재물 적치시 파손 및 판넬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가구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3 붙박이장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본공사 시공 여건에 따라 디테일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드레스룸 고급형 시스템 가구 옵션 선택 시 상부 선반을 탈착할 경우 선반 하부에 조명이 설치된 부분은 손상될 수 있으며, 손상 시 재설치는 불가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본공사시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갯수 및 위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3)조명 스타일업**

| 구분         | 옵션명                           | 주택형             | 구성내용       | 공급금액   | 비고        |
|------------|-------------------------------|-----------------|------------|--|-----------|
| 조명<br>스타일업 | 특화조명<br>선택형<br>(거실+주방<br>+안방) | 61 / 63         | 가변형벽체 선택시  | 거실 : 우물천장리니어등 + 거실매입등 + 아트월간접등(픽처레일 포함)<br>주방 : 주방슬림라인조명 + 우물천장 간접조명 + 식탁직부등 + 매입등<br>안방 : 간접 검용 직부등 | 4,480,000 |
|            |                               | 84A / 84B / 84C |            |  | 5,180,000 |
|            |                               | 61 / 63         | 가변형벽체 미선택시 |  | 6,180,000 |
|            |                               | 84A / 84B / 84C |            |  | 6,480,000 |

- 거실 우물천장리니어등 조명 유상옵션 선택 시 조명기기의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기의 측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옵션형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2(61, 63), 알파룸2(84A, 84B, 84C) 가변형 벽체 시공 선택 여부에 따라 우물천장 규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리니어등 조명 유상옵션 선택 시 조명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의 램프 색온도는 옵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공 시 3500K 기준으로 시공되며, 그 외 디테일,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화조명 선택형(거실+주방+안방)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리니어등, 거실매입등, 거실아트월간접등, 주방슬림라인조명, 우물천장 간접조명, 식탁직부등, 매입등, 안방 간접 겸용 직부등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시공됩니다.
- 거실아트월간접등의 경우, 픽처레일이 함께 등에 부착되어 시공됩니다.
- 거실 특화조명 선택형 옵션 선택 시 우물 천장내의 기본 조명인 직부등이 매입등으로 교체되며, 우물천장 라인을 따라 우물천장리니어등이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됩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 냉장고 상부장에 거실 등기구용 SMPS 단자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냉장고 상부장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주방스타일업**

| 구분                | 옵션명         | 주택형       | 구성내용                | 공급금액  | 비고        |                          |           |
|-------------------|-------------|-----------|---------------------|---|-----------|--------------------------|-----------|
| 주방<br>스타일업        | 엔지니어드<br>스톤 | 61        | 주방 상판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 4,100,000   |           |                          |           |
|                   |             | 63        |                     | 3,390,000   |           |                          |           |
|                   |             | 84A / 84B |                     | 3,430,000   |           |                          |           |
|                   |             | 84C       |                     | 3,630,000   |           |                          |           |
|                   |             | 아일랜드장 선택시 | 63                  | 주방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 3,610,000                |           |
|                   |             |           | 84A / 84B           |   |           | 3,720,000                |           |
|                   |             |           | 84C                 |   |           | 3,980,000                |           |
|                   | 아일랜드장       |           | 63                  | 아일랜드(인조대리석 상판 + 밥솥장 + 무선충전콘센트)  |           | 1,340,000                |           |
|                   |             |           | 84A / 84B           | 와이드 아일랜드(인조대리석 상판 + 밥솥장 + 무선충전콘센트 + 보조 싱크볼, 수전)                       |           | 2,270,000                |           |
|                   |             |           | 84C                 |   |           | 2,420,000                |           |
|                   | 주방<br>상부장   |           | 61                  | 주방 상부장(유리플랩장 + 하부조명)  |           | 1,850,000                |           |
|                   |             |           | 63 / 84B            |   |           | 1,650,000                |           |
|                   |             |           | 84A / 84C           |   |           | 2,000,000                |           |
|                   | 빌트인<br>냉장고1 |           | 61 / 63/ 84A / 84C  | 냉장, 냉동4도어(엘지 : BC4SAA1+ BC1K3AA) + 김치1도어 + 키큰장                        |           | 7,660,000                |           |
|                   |             |           | 84B                 |   |           | (알파룸1 기본형 or 수납강화형1 선택시) | 7,660,000 |
|                   |             |           |                     |   |           | (알파룸1 수납강화형2 선택시)        | 6,750,000 |
|                   | 빌트인<br>냉장고2 |           | 61 / 63 / 84A / 84C | 냉장1도어(엘지 : BC1L2AA) + 냉동1도어(엘지 : BC1F2AA) + 김치1도어(엘지 : BC1K3AA) + 키큰장 |           | 7,060,000                |           |
|                   |             |           | 84B                 |   |           | (알파룸1 기본형 or 수납강화형1 선택시) | 7,060,000 |
| (알파룸1 수납강화형2 선택시) |             |           |                     |   | 6,150,000 |                          |           |
| 인덕션               | 공통          |           | 엘지BEI3ANHLBI        | 1,290,000   |           |                          |           |

|  |          |    |             |           |  |
|--|----------|----|-------------|-----------|--|
|  | 빌트인 전기오븐 | 공통 | 엘지MZ385EBT1 | 460,000   |  |
|  | 독립형 렌지후드 | 공통 | 하츠ISH46S    | 600,000   |  |
|  | 식기세척기    | 공통 | 엘지DIE5PTI   | 1,250,000 |  |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 발생(세대별 상이할 수 있음) 및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가전제품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 가구의 열림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상부장) 및 공간이 설치되며,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해당 부위의 마감은 일반 벽지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 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1의 경우, 4도어 냉장, 냉동고, 1도어 김치냉장고 2가지 품목이 세트로 설치되며, 키큰장이 포함되어 함께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2의 경우, 1도어 냉장고, 1도어 냉동고, 1도어 김치냉장고 3가지 품목이 세트로 설치되며, 키큰장이 포함되어 함께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옵션 선택시 일부 타입의 경우 복도 또는 주방벽에 FIX판넬이 추가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에 포함된 가전 품목은 손잡이 위치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미러타입의 경우 반대방향으로 설치되며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 품목의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냉장고 품목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러세대타입)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품목 중 빌트인 냉장고 및 주방 장식장 옵션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인덕션(전기쿡탑 3구)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형별로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가전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전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욕실/현관 스타일업**

| 구분      | 옵션명             | 주택형 | 구성 내용  | 공급금액      | 비고 |
|---------|-----------------|-----|--|-----------|----|
| 욕실 스타일업 | 욕실1, 2 하드웨어 고급화 | 공통  | 하드웨어 고급화(국산/니켈) : 세면수전, 욕조수전, 샤워수전,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휴지걸이, 샤워부스 | 1,350,000 |    |

|                                      |              |                               |  |                               |                                      |           |
|--------------------------------------|--------------|-------------------------------|--|-------------------------------|--------------------------------------|-----------|
|                                      | 욕실1<br>스타일업  | 공통                            | 벽타일 고급화(600x600)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 젠다이 엔지니어드스톤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                               | 1,840,000                            |           |
|                                      | 욕실2<br>스타일업  | 공통                            |  |                               | 1,930,000                            |           |
|                                      | 다기능멀티<br>배기팬 | 공통                            |  |                               | 욕실1(공용) 다기능 멀티 배기팬(힘펠 FHD3-C150P)    | 600,000   |
|                                      |              |                               |  |                               | 욕실2(부부) 다기능 멀티 배기팬(힘펠 FHD3-C150P)    | 600,000   |
|                                      | 비데일체형<br>양변기 | 공통                            |  |                               | 욕실1(공용) 비데일체형 양변기(보보코퍼레이션 TCB-080SL) | 870,000   |
| 욕실2(부부) 비데일체형 양변기(보보코퍼레이션 TCB-080SL) |              |                               | 870,000  |                               |                                      |           |
| 현관<br>스타일업                           | 중문           | 61                            | 알파룸1 기본형 or 수납강화형  | 중문_여닫이도어 1개소 + 복도 벽 마감(FIX판넬) | 2,280,000                            |           |
|                                      |              |                               | 알파룸1 멀티룸형  |                               | 2,480,000                            |           |
|                                      |              | 63                            | 알파룸1 기본형 or 수납강화형  |                               | 1,720,000                            |           |
|                                      |              |                               |  |                               | 알파룸1 멀티룸형                            | 2,470,000 |
|                                      |              | 84A / 84C                     | 알파룸1 멀티룸형  |                               | 2,700,000                            |           |
|                                      | 84B          | 2,280,000                     |  |                               |                                      |           |
|                                      | 신발장<br>(고급화) | 61 / 63<br>84A / 84B<br>/ 84C | 신발장(고급화) : 조명형 신발장 + 경사선반 + 신발살균기                          |                               | 1,510,000                            |           |
|                                      |              |                               | 2,060,000  |                               |                                      |           |

- 다기능멀티배기팬 선택 시 세대 내 욕실1(공용욕실), 욕실2(부부)에 제품이 설치되며, 기존의 일반 배기팬의 설치 위치와 상이합니다.
- 다기능멀티배기팬은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다기능멀티배기팬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평면도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과 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신발장 옆 가구 마감의 크기 및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마감 형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중문 마감 및 시공여건에 따라 신발장, 복도 벽에 FIX 판넬 등이 추가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유상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 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불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아파트는 단일 제품을 제공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액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및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향후 시장 동향, 개발 경과, 성능개선 등에 따라 모델명 및 제원 등의 변경된 경우 입주 시기에 생산되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공급 및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장에는 바닥재 및 벽지, 천장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형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대금 납부계좌

| 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옵션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 BNK 부산은행 | 113-2019-4870-08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추가 선택 품목의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발코니 확장 대금의 납부일정(계약금 10% / 중도금1차(2026.06.30) 10% / 중도금2차(2027.03.30) 10% / 잔금 70%)과 동일합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1) 바닥재      | 바닥재(마루, 타일(욕실, 발코니), 현관바닥 마감재 등 일체), 굽틀,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등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2) 벽        | 해당부위 벽체마감일체(벽지, 타일, 인조석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도장  | 콘크리트 먼처리, 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마감            |
| 3)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해당부위), 발코니 천장도장   | 콘크리트 먼처리 또는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
| 4) 조명기구     | 전체 조명기구(부착형, 매입형) 및 각종 스위치 등   | 전기 배관/배선                              |
| 5) 욕실       | 천장, 타일,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해당욕실)), 샤워부스(해당욕실), 욕실장, 욕실환풍기, 콘센트, 바닥배수커버, 욕실액세서리(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일체, 수전류, 쟈다이,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부부욕실 스피커폰 등 |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 6) 주방       |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및 기구(가스쿡탑, 렌지후드 포함), 벽 마감, 수전류, 음식물탈수기, 주방가전(주방TV 등) 일체  |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 7) 문        | 문틀, 문선,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발코니, 내부 창호 |
| 8) 가구류 및 기타 | 가구류일체(선반 포함), 수전류일체  |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 표기)       | 61         | 63         | 84A        | 84B        | 84C        |
|-----------------|------------|------------|------------|------------|------------|
|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금액) | 27,005,000 | 27,564,000 | 36,059,000 | 36,017,000 | 35,931,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불선택 중 택일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본형(비확장) 기준이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공사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인접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천장 높이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8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분        | 등급         |
|-----------|------------|
| 내진중요도 1등급 | VII-0.218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5m ~ 7.0m | 지하1층 : 2.7m<br>지하2층 : 2.7m | 주출입구 : 2.7m |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하므로 견본주택에서 설계도, 모형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명칭은 “<b>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B1BL)</b>”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단지 내 일반분양, 공공임대가 혼합 배치되어 있으며, 유형 구분없이 모든 부대복리시설을 입주인이 공동사용합니다.</li> <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이 확인해야함.</li> <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li> <li>•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li> <li>•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li> <li>•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 면적 변</li> </ul> |
|----|--|

|                        |  |
|------------------------|--|
|                        | <p>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li> <li>•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li> <li>•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함.</li> <li>•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함</li> <li>•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함</li> <li>• 아울러,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 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추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li> <li>•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함.</li> <li>• 견본주택(홈페이지), 광고 홍보인쇄물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VR, CG 및 모형,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li> </ul> |
| <p>사업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li> <li>• 경관녹지, 완충녹지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기·난방시설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li> </ul>  |

-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당사와는 무관하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연결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인근 중심상업용지 예정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속동 외관색채, 외벽마감, 내부 공용부 마감은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디자인, 색채 등 디자인개선, 당사 디자인 메뉴얼 변경, 인허가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기타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함.
  - 본 단지 내 일부세대는 주변 산지 조망 시, 묘지가 보일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여건을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측과 동측에 분묘가 입지하므로 조망·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묘개장(이장) 및 이설 등은 불가능함.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3구역(전술)으로 지정된 지역임.
  - 지구 내에는 공공(장기)임대, 민간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상복합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북서측에 갈치호수(저수지), 소규모 집단취락지, 수리산도립공원, 남동측에 지하철 4호선(대야미역), 남측에 동서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 지구 서남측에 반월호수(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철도 및 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신혼희망타운 단지(A2BL)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민간 축사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조망·냄새·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주변에 군포IC(영동고속도로), 남군포IC(평택-파주고속도로(수원-광명))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 주변에 군포 송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의왕 초평지구(공사중),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의왕ICD,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남측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23.6월 지정) 추진예정이며, 동 사업지구의 영향으로 본 지구 지구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천, 공원·녹지, 학교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3개의 고압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중앙부 및 동측 송전선로는 지중화(지구내 케이블헤드(C/H) 설치) 예정이며, 지구 서측 송전선로는 준치 예정임. (단지 남측과 서측에 송전탑이 위치하여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등의 공사주체는 LH와 한국전력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
|--------|---|
| 단지내부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맞은편 경관녹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으로(위치, 크기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당첨자는 계약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요인 발생하여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는 직각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단지로서 단지 배치구조 및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li> <li>•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함.</li> <li>• 난방방식은 개별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임.</li> <li>• 공동주택의 특성상 측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됨.</li> <li>•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함.</li> <li>•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li> <li>•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동 하부 출입구 내부 및 주동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의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 부담임.</li> <li>•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li> </ul> |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옥탑장식물은 구조설계적용에 의하여 기둥, 보, 벽체가 신설/삭제되거나 부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화설계적용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공용부의 창호 위치는 옥탑장식물 등에 의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입면특화 디자인은 입면 패턴디자인을 고려하여 저층에 적용 및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의 색채계획은 경관심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생활타리 및 웬스 설치구간은 주변현황 및 공사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 적용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근린공원, 경관녹지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내 보행통로(교통영향평가 의견)는 인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예정이며 의견에 따라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
- 해당 사업대지 내 보행/차량 동선계획, 수직동선계획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 계단, 외부 램프 등), 인접(근린공원, 경관녹지, A2BL LH단지) 연결 동선계획, 단차(레벨) 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여건에 의하여 문주 설치 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에 의하여 경비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실외기 공간(차폐)은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의 경우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내 대지의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내 비상차로등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상급기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웬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진입 후 회차로(교통섬)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음.
- 101동은 주출입구와 인접해 있으며, 문주에 의한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소음, 진동, 악취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104동 등은 주출입구 거리가 멀 수 있으며,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101동의 주출입구가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됨.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행자 진입로 및 통행로가 설치되는 인근 주동세대는 소음, 진동,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등이 101동과 인접하여 저층부 세대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예정),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임.
- 각 주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과 105동 사이에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위치해 있으며, 101동과 102동 사이 및 103동과 104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해 있음. 이로 인해 세대간섭,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전동 저층 세대는 제연휨룸, 휨룸 등 D/A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D/A는 실시공시 높이 및 형태 등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주동 필로티 및 주동 인근에 설치되며, 형태, 크기, 높이, 위치, 조경계획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전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지하1층~지상1층 내 계획 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한 인접한 저층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에 인접한 동은 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101동 인접하여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계단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인접하여 외부계단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일부 코어 및 104동은 지하 2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동(101동~105동) 1층 세대근처에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등 돌출된 시설로 시야간섭, 생활소음, 진동,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전 동 인근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세대간섭,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각 주동 인근(지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대간섭,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 실외용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대간섭,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102동, 105동 사이 및 102동, 103동 사이 지하층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동은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101동, 105동 쓰레기 보관소는 동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등이 결정되며,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를 거쳐 제작 및 설치하고,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 조경 식재가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에 설치되는 D/A, 계단, 탐라이트 등의 시설물은 조경계획 특화 및 세대간섭에 의하여 설치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 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

- 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102동)/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1동, 103동), 지하1층(헬룸), 지하2층(헬룸)]
- 단지 옥탑에 (102동 1개소) TV공청 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지상1층에 설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 안테나/중계설비(옥외안테나 101동, 103동, 옥상층 2개소, 중계 설비 101동, 103동, 옥상층, 지하1층 헬룸 또는 PIT, 지하2층 헬룸 또는 PIT 2개소)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 장비는 본 공사 시 동호수 변경에 따른 변경과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상부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한전패드(1~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한전패드의 위치가 추후 계획변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음.
  - 102동, 103동, 104동 아파트 상부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피뢰침, 안테나, 옥탑조명(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 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 문주 및 주차출입구,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생활폐기물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 이터(주동 및 외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조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방관 진입창표시(거실, 발코니)가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동 엘리베이터는 16인승이며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 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단지 상부 및 측면으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 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                                  |   |
|----------------------------------|---|
|                                  | <p>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경기도 군포시청 관계부서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본 아파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이며, 관리사무소에 설치 예정임. (개수 및 위치는 추후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외부특화 디자인, 동출입구 형태,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p>학교 배치 등<br/>관련분야<br/>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교는 대야미지구내 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b>둔대초등학교</b>로 임시 배치할 계획임.</li> <li>• 중학생은 군포시중학교 내 배치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생은 <b>안양권(군포,의왕,안양,과천시)내</b> 학생배치 예정임.</li> <li>• 지구 내 계획되어 있는 학교시설(유, 초, 중)은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령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및 설계계획 보류,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li> </ul>  |
| <p>부대시설<br/>및<br/>커뮤니티시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li> <li>•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환기시설 등 설비가 설치되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서 미관 등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근린생활시설 전용공간 내부로 급수, 가스, 소화배관이 시공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의 옥상 파라펫은 특화설계적용 및 실외기실 설치에 의하여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li> <li>• 어린이 놀이터, 유아 놀이터 등이 설치되는 인근 주동세대는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위치는 조정 및 차폐시설,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분양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분양 시 홍보물, 이미지 및 견본주택의 부대시설 모형, 마감, 시설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음.</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로 인한 소</li> </ul> |

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포함)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하층, 어린이집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고, 또한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전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의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분진,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에 변동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됨.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비공간 확보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진출입레벨,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방재실, MDF실, 근로자 휴게실(남, 여), 숙직실) 1개소, 주민공동시설(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주민회의실,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탁의실(남,여), 샤워실(남,여)), 경로당(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노인회사무실, 거실, 조리실, 창고) 1개소, 어린이집(유희실,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주방) 1개소, 키즈스테이션, 작은 도서관(열람실, 독서실(남, 여) 1개소, 경비실 1개소,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유아 놀이터 1개소, 지하주차장 2개층

지하주차장

- 대지 서측(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설치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인근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 위치하여 인근세대는 차량 통행에 의한 빛 간섭,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급속, 완속, 콘센트)이 포함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 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1동은 지하1층 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103동 일부 코어 및 104동은 지하2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지하2층 2.7m, 지하1층 2.7m이고,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임. 다만,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휀룸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 입주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2층 2.7m, 지하1층 2.7m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의 경우 구조설계적용에 의하여 기둥 혹은 구조부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특화설계적용으로 자재 및 설치규모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저수조 및 기계실 등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진입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됨.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당 2개소씩, 총 10개소가 설치되며, 추후 시공과정에서 형태,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105동 하부 북측 지하에 기계실/저수조(이)가 이격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설비시설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지열기계실/우수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냄새, 매연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및 전시품목 주요사항**

|                                |   |
|--------------------------------|---|
| <p><b>건본주택 및 전시품목 주요사항</b></p> | <p><b>[ 건본주택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본주택은 1층 발코니 확장형 세대로 시공됨. (1층 천장고: 2,500mm / 기준층 천장고: 2,400mm) 가변벽체 선택과 발코니 비확장 시 인테리어, 가구, 설비, 전기, 조명, 천정 형태 등의 계획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벽체 두께에 따라 내부 유효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li> <li>•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li> </ul> |
|--------------------------------|---|

|                            |   |
|----------------------------|---|
|                            | <p>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li> <li>• 당첨자는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li>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은 63, 84A 타입이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임.</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천장 환기구,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될 예정임.</li> </ul> |
| <p><b>제공/<br/>전시품목</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세탁기, 건조기, TV, 밥솥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스포트라이트, 팬던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소품임.</li> <li>•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등은 소방법에 따른 견본주택 설치 기준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수량은 변경되어 설치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CCTV는 고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이며,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각실 천정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을 위한 설비로서 실 제공품목이 아님.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가능)</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벽지 및 시트(창호,걸레받이,목창호)는 가설건축물(견본주택)관련 방염처리되어 시공되었으나, 본 시공은 방염처리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시공됨.</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li> <li>•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품목 / 확장 시 제공품목 / 별도유상옵션품목 / 전시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음. 본 공사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실제로 시공·설치되지 않는 사항임.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li> </ul>   |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됨.
- 건본주택 내 커튼박스 및 팬트리에 설치된 간접조명은 디스플레이용으로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주요사항

|              |   |
|--------------|---|
| 단위세대<br>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 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li> <li>•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li> <li>•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li> <li>• 입주자가 사용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시행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 불가할 수 있음.</li> <li>•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입주 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샘플하우스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함.</li> <li>•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점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바람.</li> <li>• 61타입 세탁실은 공간협소하여 선반 설치시 세탁기 및 건조기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세탁실 내 선반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천장형(빌트인) 공기청정기가 기본으로 제공됨. 본 공사 시, 설치위치·사양·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관리는 입주자 부담임.</li> </ul> |
| 전기/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환기의 직배기 설치, 전열교환기 급배기구는 설비 및 하향식 피난구 간섭으로 입면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실시공사 크기 및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음.</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공간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다용도실 천장마감 있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침실벽체(84A,B,C : 침실 2, 61, 63 : 침실3)에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예정이며 본 공사시 규격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욕실 바닥(천장)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이 주방 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 천장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전기분전반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세대복도 또는 침실 등에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가스계량기가 세탁실 내부에 설치되어 돌출되어 보일 수 있고 창호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li> </ul>   |
| <p><b>발코니 확장<br/>및<br/>마이너스<br/>옵션</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li> <li>•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li> <li>•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li> <li>•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li> <li>•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li> </ul> |

|                                      |  |
|--------------------------------------|--|
|                                      | <p>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p><b>추가<br/>선택품목<br/>(유상옵션)</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건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li> <li>•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 위치가 상이함.</li> <li>•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천장몰딩, 우물천정, 등박스 및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li> <li>•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p><b>단위세대<br/>및<br/>마감재</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목문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보호대가 설치됨.</li> <li>•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장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61, 63 거실과 침실2 사이 벽체 일부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임. 타입별로 별도 언급하지 않은 내부공간 간 구획벽은 화장실과 면한 부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식벽체임. (타입별 침실1, 침실3의 구획벽은 골조벽 또는 건식벽체임)</li> <li>• 각 타입별로 해당되는 내부공간 간 구획벽은 건식벽체임.</li> <li>•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건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li> <li>•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무늬 패턴은 본 공사 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주방, 아트월, 욕실,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li> <li>•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세대 천장고 기준은 층별 상이하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각 동 2층~최상층: 2,400mm, 1층 2,500mm)</li> <li>•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p><b>창호공사</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창호의 색상, 프레임, 규격등 제작업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 가스배관 및 드레인 등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li> </ul>   |
| <p><b>발코니<br/>및<br/>실외기실</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실외기 그릴창은 실외기의 환기 성능 확보를 위하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화장실 PD내부에 우수 드레인이 설치가 되어 배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향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야함.</li> <li>• 101동, 102동, 105동 하부 필로티가 있는 세대는 실외기실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전동 1층 세대 실외기실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li> </ul>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등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서

|   |           |   |
|---|-----------|---|
| <h2 style="margin: 0;">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h2>   |           | 인증번호  |
|   |           | 제 2025-101-022 호  |
|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           |   |
| <p>※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br/>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p>  |           |   |
| 신청인   | 이름        | (주)금강주택   |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금강빌딩 (역삼동)  |
| 건축물   | 이름        | 군포대야미B1BL 금강헨테리움  |
|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속당동 90-3  |
| 인증내용  | 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br><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
|   | 홈네트워크건물   |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 |
| <p>2025년 05월 21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서울전파관리소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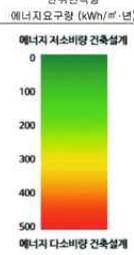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군포 대야미 B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인증번호         | : 25-주-에-1+-0073   |
| 준공연도       | : 20280228                       | 평가자          | : 신화석              |
| 주소         |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 공동주택지구 B1BL | 인증기관         | : 한국부동산원           |
| 층수         | : 지하2층 / 지상29층                   | 윤형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          |
| 연면적        | : 80992.6585(㎡)                  | 유효기간         |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공동주택                           | <b>인증 등급</b> |                    |
| 설계자        | : ㈜디즈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등급: 1+등급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   |           |   |
|--|-------------|---|-----------|---|
| 단위면적당<br>(에너지요구량 (kWh/㎡·년))  | 요구량         | 단위면적당<br>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 등급        | 단위면적당<br>CO <sub>2</sub> 배출량 (kg/㎡·년)   |
|  <p>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p> | <p>84.8</p> |  <p>에너지효율 높음</p> | <p>1+</p> |  <p>CO<sub>2</sub> 배출 낮음</p> |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                           |                             |                                       |
|--------------|---------------------------|---------------------------|-----------------------------|---------------------------------------|
| 구분           | 단위면적당<br>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br>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br>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br>CO <sub>2</sub> 배출량 (kg/㎡·년)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45.8                      | 83.3                      | 63.4                        | 17.2                                  |
| 급탕           | 30.7                      | 33.6                      | 24.8                        | 6.8                                   |
| 조명           | 8.3                       | 7.0                       | 19.1                        | 3.3                                   |
| 환기           |                           | 3.1                       | 8.6                         | 1.5                                   |
| 합계           | 84.8                      | 127.0                     | 115.9                       | 28.8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V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 1+등급 )을 부여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군포 대야미 B1BL 공동주택
2. 신청자: ㈜금강주택
3.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90-4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향충격을 차단성능                | ★    |
| 2. 중향충격을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파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해당없음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해당없음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22. 생태면적률                | ★★   |
| 23. 생활서식공간(비오물) 조성       |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13. 홀네트워킹 종합시스템           |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해너비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            |                                   |
|------------|-----------------------------------|
| 건축물명       | 군포 대야미 B1BL 공동주택                  |
| 건축주        | ㈜금강주택                             |
| 준공(예정)일    | 2028년 3월 31일                      |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90-4번지 일원             |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7층 / 502세대             |
| 면적         | 80,992.6585㎡ (평가면적: 80,307.8899㎡)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설계자        | ㈜디도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 개요】

|      |                      |
|------|----------------------|
| 인증번호 | G-SEED-P-2025-0537-7 |
|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유효기간 | 2025.6.13. - 사용승인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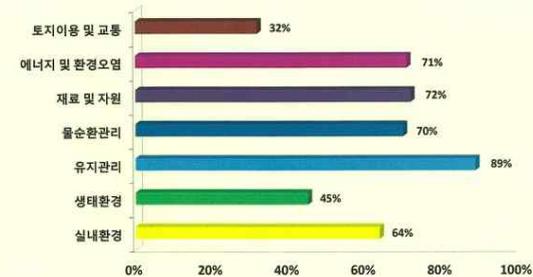
【인증 등급】

|      |                    |
|------|--------------------|
| 인증등급 | 우수등급(공동주택)         |
|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
|      |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2025년 6월 13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항목   |        | 공종           | 금액(천원)      | 비고     | 항목         |             | 공종          | 금액(천원)     | 비고 |
|------|--------|--------------|-------------|--------|------------|-------------|-------------|------------|----|
| 택지비  |        | 택지매입원가       | 97,716,966  |        | 공사비        | 건축          | 타일공사        | 1,077,331  |    |
|      |        | 기간이자         | 8,960,613   |        |            |             | 돌공사         | 869,187    |    |
|      |        | 필요적 경비       | 5,096,915   |        |            |             | 도장공사        | 1,360,612  |    |
|      |        | 그 밖의 비용      | 13,850,246  |        |            |             | 도배공사        | 743,115    |    |
|      |        | 계            | 125,624,740 |        |            |             | 수장공사        | 1,474,136  |    |
|      | 토공사    | 770,962      |             | 주방용구공사 |            |             | 2,735,075   |            |    |
| 공사비  | 토목     | 흙막이공사        | -           |        |            | 기계<br>설비    | 그 밖의 건축공사   | 1,029,731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 급수설비공사      | 1,478,222  |    |
|      |        | 옹벽공사         | -           |        |            |             | 급탕설비공사      | 1,171,360  |    |
|      |        | 석축공사         | 183,035     |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2,106,966  |    |
|      |        | 우수, 오수공사     | 584,410     |        |            |             | 위생기구설비공사    | 1,559,290  |    |
|      |        | 공동구공사        | -           |        |            |             | 난방설비공사      | 2,534,254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213,945     |        |            |             | 가스설비공사      | 496,360    |    |
|      |        | 도로포장공사       | 545,310     |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131,810    |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173,485     |        |            |             | 특수설비공사      | 790,958    |    |
|      |        | 정화조시설공사      | 78,735      |        | 공조설비공사     |             | -           |            |    |
|      |        | 조경공사         | 2,424,151   |        | 그밖의<br>공종  |             | 전기설비공사      | 5,683,448  |    |
|      |        | 부대시설공사       | 708,612     |        |            |             | 정보통신공사      | 2,543,210  |    |
|      | 공통가설공사 | 2,838,049    |             | 소방설비공사 |            | 5,734,182   |             |            |    |
|      | 가시설물공사 | -            |             | 승강기공사  |            | 1,359,158   |             |            |    |
|      | 건축     | 지정 및 기초공사    | 4,222,517   |        | 그밖의<br>공사비 | 일반관리비       | 3,932,689   |            |    |
|      |        | 철골공사         | -           |        |            | 이윤          | 4,830,703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26,200,128  |        | 계          | 105,171,566 |             |            |    |
|      |        | 용접공사         | -           |        | 간접비        | 설계비         | 1,363,746   |            |    |
|      |        | 조적공사         | 1,255,654   |        |            | 감리비         | 3,318,717   |            |    |
|      |        | 미장공사         | 1,322,763   |        |            | 부대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6,929,638  |    |
|      |        | 단열공사         | 2,988,900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3,454,937  |    |
|      |        | 방수, 방습공사     | 1,357,523   |        |            |             | 보상비         | -          |    |
|      |        | 목공사          | 3,332,953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4,961,321 |    |
|      |        | 가구공사         | 3,678,520   |        |            | 계           | 30,028,359  |            |    |
|      |        | 금속공사         | 1,970,362   |        |            | 그 밖의 비용     | 33,564,635  |            |    |
|      |        | 지붕 및 환풍공사    | 362,979     |        |            | 합계          | 294,389,300 |            |    |
|      |        | 창호공사         | 4,706,043   |        |            |             |             |            |    |
| 유리공사 |        | 1,610,733    |             |        |            |             |             |            |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 금액(원)     | 항목            |                 | 금액(원)          |               |
|---------------|---------------|-----------|---------------|-----------------|----------------|---------------|
| 택지비<br>가산항목   | 가산비 계         |           | 건축비 계         |                 | 33,584,906,123 |               |
|               |               |           | 구조형식 가산비(지상층) |                 | 3,094,589,347  |               |
|               | 법정 택지이자       |           | 법정초과복리시설 건축비  |                 | 1,306,545,878  |               |
|               | 취득세           | 취득세       | 3,908,678,639 | 인텔리전트<br>설비공사비  | 홈네트워크          | 5,894,431,043 |
|               |               | 교육세(취득세)  | 390,867,863   |                 | 초고속통신특등급       | 1,251,623,245 |
|               | 재산세           | 재산세       | 410,411,256   |                 | 에어컨냉매배관        | 2,383,744,104 |
|               |               | 교육세(취득세)  | 82,082,243    |                 | 기계환기설비         | 기계환기설비        |
|               |               | 재산세도시지역분  | 287,287,872   |                 |                |               |
|               | 등기수수료         | 보수료       | 17,275,297    | 공동주택 성능등급       |                | 4,126,119,130 |
|               |               | 인지세       | 312,269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                | 1,725,826,104 |
|               | 말뚝박기 공사비      |           | 2,696,426,255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                | 473,426,114   |
|               | 암석지반 공사비      |           | 7,486,412,873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                | 244,186,021   |
|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 2,579,810,769 | 흡착, 흡방습 친환경재료   |                | 244,186,021   |
|               | 택지와 관련된 경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087,597,094 | 건축특화            | 외관특화공사비        | 5,366,467,898 |
| 법정초과 조경시설 설치비 |               |           |               |                 | 1,768,327,247  |               |
|               |               |           |               | 분양보증수수료         | 775,548,333    |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82025-101-0004300 호 | 일금 이천육십억칠천이백오십일만원<br>( ₩ 206,072,510,000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VAT포함)

|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비고 |
|------|------------------|-------------|-------------|-------------|----|
| 회사명  |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해우이엔지    | (주)케이제이종합감리 | (주)신화에프이원   |    |
| 감리금액 | 1,819,469,300    | 555,667,000 | 821,921,300 | 121,660,000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
| 상 호    | (주)금강주택            |
| 법인등록번호 | 110111-0313314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자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문의 : ☎ 1600-7699

■ 홈페이지 주소 : <http://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com>

■ 현장 및 견본주택 약도

